

시청역중앙하이츠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 흥보관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관리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 비 접촉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흥보관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I. 개요

◆ 본 건축물은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구청 2021-건축과-분양신고-7367호(2021.12.07)로 분양광고 신고 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건축물임 [허가번호/2020-건축과-신축 허가-제88호 (2020.10.20.)]

◆ 용 도 : 시청역중앙하이츠 근린생활시설(상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45-6에 3층지

◆ 연 면 적 : 전체 건축면적 15,230.25m² 근린생활시설 509.31m² 상가 총 8호실

◆ 대지면적 : 1,457.20 m²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 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20층(건물 높이 : 63.60M)

◆ 공급 대지 주택지역/지구 현황 : 일반상업지역, 방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 보호구역, 일반경관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종공예정일 : 2023년 9월 08일 예정

◆ 입점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착한 준공일 및 입점일자는 추후별도 통보)

- 실 입점일이 예정일보다 일정이 늦어질 경우 미리도 분양대금을 실입점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함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규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8호실

◆ 층별용도

구 분	용 도
지하2층 ~ 지하1층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주차장+기계식 주차, 통신실
지상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계단설+감시제어반설, 지상 1층 계
지상2층 ~ 2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진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도도개수(E) : 내진설계계수 : 건축물의 중요도 : 반응수계수(R)

0.11 S4 2.0 C 중요도 1 4.0

◆ 공급면적 및 금액

구 분	호 실	평 수	전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공유면적 (m ²)	분양면적 (m ²)	대지지분 (m ²)	분양금액 (V,A,T 포함)
상 가	101호	32.19	67.33	90.08	16.34	106.42	10.98	1,262,123,510
	102호	35.31	73.84	98.79	17.93	116.72	12.04	1,384,281,046
	103호	11.92	24.92	33.34	6.05	39.39	4.06	467,159,103
	104호	11.92	24.92	33.34	6.05	39.39	4.06	454,849,410
	105호	15.68	32.80	43.88	7.96	51.84	5.35	649,312,969
	106호	21.99	46.00	61.54	11.17	72.71	7.50	862,139,856
	107호	25.06	52.40	70.10	12.74	82.84	8.54	982,506,410
	합 계	154.07	322.21	431.07	78.24	509.31	52.53	6,062,372,304

* 면적 표시 방법은 전총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나 척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부기기자세 표시 금액이며, 호수별 공식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준 세법상 등록세 포함) 기타 세제공과금 등 포함된 가격입니다.

* 대지지분은 수반될 별도로 신청하였으며, 소수점 4자리 이하의 면적차이는 입의조정하였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의 법령면적은 공부면적과 동일합니다.

* 대지지분은 수반될 별도로 신청하였으며, 소수점 4자리 이하의 면적차이는 입의조정하였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의 법령면적은 공부면적과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의 분양대금은 사업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서 관리합니다.

III.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모집기간 · 모집방법 및 신청일자

- 모집기간 :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청약일)로 하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완료 또는 사용 승인 일까지로 합니다.

- 모집방법 :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방법을 자를 선정하며(호수는 흥보관에서 공개주첨 하여 결정),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자격

분양광고(2021.12.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1인당 최대 2실 청약 가능하며 호실은 무주택으로 공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거주지와 청약정원에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금액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으며, 당첨자는 흥보관에서 청약자 입회하여 공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본 건축물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분양분을 신청하고 있어 이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청약 일정 및 청약신청보증금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청약 일정

구 분	일정	청약 장소 및 당첨자 선정
청약일	2021. 12. 14(화) 10:00 ~ 17: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로 622 시청역중앙하이츠 흥보관
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1. 12. 15(수) 10:00 ~ 17:00	
계약일	2021. 12. 16(목)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현장 청약 접수만 진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2 시청역중앙하이츠 흥보관)

◆ 청약신청 보증금 납부방법

*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1,000만원으로, 당첨 후 청약신청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합니다.

구 분	청약신청보증금	은행명	납부처	예금주	비 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실 1,00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 848601-04-272934	케이비부동산신탁㈜	(흥보관 현수 납부 불가)

◆ 청약 신청 시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신청서(부자포함)	■ 청약신청서(흥보관 비)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 대리 청약신청자의 도장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운전면허증(국내외), 신분증(국내외) ■ 청약신청보증금 납입 명수증(무통장입금)
법인	■ 청약신청서(흥보관 비) · 법인 인감, 법인 명부, 법인 등록증(부산광역시 청약신청자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인·이사인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 국내외 신분증(국내외) ■ 법인 대표인·이사인 신분증 증명서(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법인 대표인·이사인 신분증 증명서(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제 3자 대리 신청서(주가사장)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서(직계존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서(흥보관 비) · 대리인 신분증(국내외) ■ 청약신청서(흥보관 비) · 대리인 신분증(국내외)

- 상기 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유통 기간으로 발급하므로 유통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바입니다.

- 주민등록증 등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밀접 부록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보증금 환불 방법

환불 기간	환불 방법	환불방법 및 절차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명당 1일 이내 환불	청약 시 접수한 환불계좌로 환불기간에 자동이체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간 동일해야 함) ※ 환불계좌 청약신청보증금 대금의 기준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 보증금은 계약자의 일부로 납부되는 경우에만 청약금 납부일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만 청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계좌를 미지정한 경우 청약금은 계약자에게 환불됩니다. - 환불계좌를 미지정한 경우 청약금은 계약자에게 환불됩니다.

- 상기 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유통 기간으로 분양하므로 유통을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는 공급계약서에 납부되는 청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분양하는 당첨자에게는 청약자로 인정되며, 당첨자는 청약 신청 후 예상되는 연체로